

서울중앙지방법원 2019. 7. 19 선고 2019가단1075 판결 [구상금 청구의 소]

전 문

원고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B

피고1. 주식회사 C

2. D

3. E

변론 종결2019. 6. 21.

판결 선고2019. 7. 19.

주 문

1.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7,029,703원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가. 피고 E에 대한 청구 :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나. 피고 주식회사 C, D에 대한 각 청구 : 자백간주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)

판사김병룡

별지